

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3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권석규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규제 내용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동 조례안은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제4조(규제 법정주의)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,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, 수정 등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'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'과 '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' 두 곳으로,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기존 조례 제11조에 명시된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제2호 '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' 는 규제법정주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이를 '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'로 수정하고,
 - 제3호 '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' 와 제5호 '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' 또한,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,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취소 사유인 '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'를 추가하였고,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2조에 명시된,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정지, 폐쇄사유인 '시설의 회계부정,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'를 추가한 것으로,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참고자료 >

1.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

□ 사업개요

- 시설명 :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(관장 정준영)
- 지원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,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- 운영주체 : 사회복지법인 승덕원(대표 김성천)
- 개관일 : 1990. 4. 1.
- 위탁기간

1차	2차	3차	4차	5차	6차
90.4.1~95.3.31	95.4.1~00.3.31	00.4.1~05.3.31	05.4.1~10.3.31	10.4.1~14.12.31	15.1.1~19.12.31

- 종사자현황 (단위:명)

계	관장	사무국장	2급	3급	4급	5급	기능직	고용직
28	1	1	3	3	16	1	1	2

- 예산내역 (단위:천원)

2015년 당초			2016년			증감
소계	인건비	운영비	소계	인건비	운영비	
1,310,960	1,010,960	300,000	1,432,390	1,090,390	342,000	121,430

□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

(단위:명/연인원)

사업분류	사업내용	계획	실적
합계		305,444	177,297
상담지도	심리·언어·물리진단, 상담	8,392	4,366
사회심리재활	재활상담, 판정평가, 성교육 등	5,476	3,217
지역사회자원개발	자원봉사활용 및 교육 등	17,922	9,369
의료재활	운동치료, 물리치료, 가족지원 등	8,870	5,725
교육재활사업	조기교육, 방과후개별지도, 사회적응훈련 등	960	462
직업재활사업	업체개발·상담, 직업상담, 직무지도 등	40,545	27,382
홍보 및 기타	홍보, 스포츠여가 등	223,279	126,776

□ 법인현황

<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>

- 위 치 : 충주시 충원대로 490
- 법인설립일
 - 1950. 4. 27. 【보건사회부, (재)춘광애육원】
 - 1980. 2. 29. 【보건사회부, 사회복지법인 송덕원(명칭변경)】
- 임 직 원 : 274명(임원 9, 직원 265)
- 재산현황 : 토지 28,707㎡, 건물 10,347㎡
- 운영시설 : 10개소
 -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,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, 나눔의집, 송덕재활원, 다모아주간보호센터, 공동생활가정 햇빛촌, 직업재활시설(zan, 웰코), 충주어울림센터, 송덕학교

2.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위탁 운영 현황

□ 사업개요

- 시설명 : 충청북도장애인곰두리체육관 (관장 안중태)
- 지원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,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- 운영주체 : 사단법인 충북사회복지개발회(회장 윤성열)
- 위탁기간 : 2015. 3. 10 ~ 2019. 12. 31 (4년 9개월)

1차	2차	3차	4차	5차
99.3.10~02.3.9(3년)	02.3.10~07.3.9(5년)	07.3.10~12.3.9(5년)	12.3.10~15.3.9(3년)	15.3.10~19.12.31(4년9개월)

- 설치일 : 1999. 4. 29.
- 규모 : 부지 11,819㎡, 연면적 3,676㎡(지하1·지상3층)
- 주요시설 : 수영장, 체육관, 장애인목욕탕, 론볼장, 휠체어테니스장, 물리치료실, 인터넷정보실(7개 시설)
- 종사자수 : 20명
- 예산내역

(단위:천 원)

2015년			2016년			증감
소계	인건비	운영비	소계	인건비	운영비	
850,980	650,980	200,000	964,880	728,880	236,000	113,900

□ 2015년도 추진실적(3분기)

구분	계	장애인	비장애인
회원	1,417명	1,236 (87.2%)	181 (12.8%)
사업분류	사업내용		실적(연인원)
합계			93,481명
재활수영사업	재활수영, 장애아수영캠프, 수중치료 등		45,838명
재활체육사업	재활운동교실, 재활체육동우회 등		31,768명
지역사회연계	전문자원봉사단운영(수영, 수지침, 이미용)		3,543명
의료보건위생	의료재활,건강관리,보건위생		12,332명

□ 사용료 징수내역(수영장 이용료)

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	2015년도
171,867	172,525	168,415	166,724	102,000

□ 곰두리체육관 이용료 현황

구분	장애인	비장애인	비고
자유수영	무료	30~45천원	1개월 요금 주2회 실시 (1개반 6명이상)
재활수영 (강습)	성인	25,000	
	중고생	20,000	
	어린이	15,000	

□ 법인현황

< 사단법인 충북사회복지개발회 >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21 (사천동)
- 법인설립일 : 1997. 4. 21
- 임원 현황 : 13명(이사 11, 감사 2)
- 재산 현황

총액	기본재산	보통재산	적립금	후원금
142,442	10,000	61,841	70,000	601

- 주요사업
 - 사회복지사업, 학술연구 및 출판사업
 -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수탁운영 (곰두리체육관, 증평국민체육센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2. 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4.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
5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. 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.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5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행정규제 기본법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·인권·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·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62조(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폐쇄 등)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30.>

1.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·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때

3.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
4.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,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
5.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

6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